

[문서번호]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435(2022.11.17.)

[세목] 상증

[납세자회신번호]

[제 목]

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 제공의 의미

[요 지]

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'수행할 사업기회'가 포함되는지 여부
(제1안) '수행할 사업기회'가 포함되지 않음
(제2안) '수행할 사업기회'가 포함

[답변내용]

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. 끝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
[관련법령]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【사업기회 제공방법】